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0.

발 의 자 : 이성윤 · 조계원 · 김문수
서미화 · 박지원 · 박희승
서영교 · 양부남 · 장경태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,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(사전)투·개표참관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.

한편 현행 「정당법」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「정당법」상 정당 활동 가능 연령과 현행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상이함.

이처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허용해두면서도, 정당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,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.

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 의견에서도 “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

보유하였다”고 판단한 바 있음.

이에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16세 이상의 사람도 (사전)투표·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 미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제1항제2호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16세 미만인 사람

제161조제7항 중 “未成年者”를 “16세 미만인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81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16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	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미성년자(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	2. <u>16세 미만인 사람</u>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第161條(投票參觀) ① ~ ⑥ (생 략)	第161條(投票參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・ <u>未成年者</u> ・第18條(選舉權이 없는 者)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・第53條(公務員 등의 立候補)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	⑦----- <u>16</u> <u>세 미만인 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자·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 자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. ⑧ ~ ⑭ (생 략) 제181조(개표참관) ① ~ ⑩ (생 략)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. 1. (생 략) 2. <u>미성년자</u> 3.·4. (생 략) ⑫ (생 략)	----- -----. ⑧ ~ ⑭ (현행과 같음) 제181조(개표참관) ① ~ ⑩ (현행 과 같음) ⑪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16세 미만인 사람</u> 3.·4. (현행과 같음) ⑫ (현행과 같음)
---	--